고령화시대 노인부양부담과 여성의 경제활동[1)]

김 미 경*·주 재 선**

초 록

본고는 여성개발원의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연령별 노인부양부담 및 취업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여성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안하기 위한 선행작업으로 수행되었다.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 및 여성 고학력화 경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욕구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특히 중장년층(45세 이상) 여성인력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장년 여성의 취업과 노인부양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고령사회 대비 여성고용정책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Ⅰ. 문제제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가족부양의 영역으로만 여겨져 왔던 노인부양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은 여전히 사회부양보다는 가족부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으로, 노인부양 주책임자는 가족 내에서도 며느리(35.1%)나 부인(31.5%) 등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정경희, 2001). 최근 들어 가족 내 노인부양부담을 완화하기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1) 본 논문은 한국여성개발원과 인구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여성의 생애와 취업 :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학술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토론내용 등을 토대로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위한 사회지원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인부양정책 및 프로그램개발 방향은 만성질환 및 기능장애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이용 및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주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재가 무보수 노인부양 부담을 져야 하는 이유 때문에 결과하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참여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단지 문제제기(Blody et., 1987; 최혜경, 1999)에만 그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증가하는 생산연령인구의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원하는 생산연령인구를 노동시장에서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 이후 현재까지는 청년실업을 비롯한 남성 중고령자의 조기퇴직 문제 등이 아직까지 노동시장 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변화 추세로 간다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2]로 진입하게 되는 2020년 이후에는 생산연령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문제화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때를 대비한 고용정책의 도입이 시급하며, 이는 현재로서 취업의사가 있을 경우 대부분 경제활동 상태에 있는 남성보다는 취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여성인력, 특히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고용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는 여성의 취업의 걸림돌(여성부, 2001)로 보육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출산율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층 증가는 앞으로 보육문제보다 노인부양 문제를 더 부각시키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령사회를 대비한 여성고용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해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 대책마련을 위한 선행작업으로 여성의 연령별 노인부양 및 취업 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노인부양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목표집단은 중고령 여성계층이 아닐 수 없다. 결혼·출산과 함께 취업을 중단하였거나

---

2)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비가 전체 인구의 7%이상을 차지할 때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14% 이상일 때는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칭하고 있다.

애초에 취업경험조차 없는 여성들이 출산 및 육아 부담을 벗어난 시점에 이르러 재취업을 원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여성개발원이 2000년 실시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비경제활동 여성 중 일자리가 있다면 취업을 희망하는가하는 질문에 대해 31.2%의 기혼여성이 희망한다고 응답하였고[3], 기혼여성이 취업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직을 못한 이유로 가사 및 집안일 때문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 중 70.2%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지닌 사람들이었고 가사 및 집안일 때문에 취업의향이 있음에도 구직을 못한 기혼여성들 중 대졸이상자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고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여성의 노인부양부담실태에 대해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여성의 연령별로 노인부양부담 및 취업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본 고에서는 최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노동시장 내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증가 및 여성 고학력화 경향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욕구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특히 중장년층(45세 이상) 여성인력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년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서 이들의 노인부양 문제를 살펴보자 한다.

Ⅱ. 연구배경

1. 고령화 시대 여성의 경제활동

최근 우리 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되고 있는 현상이 출산률 감소[4]에 따른 연소인구의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라 할 수 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 인구의 7%에 해당하는 경우 고령화 사회로 보는 UN의 기준[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 고령화 사

3) 미혼여성의 경우 19.8%만이 취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4)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47(1970년 4.5%)로 저출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회로 진입하였다. 노령인구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라는 문제는 경제활동인구의 부양비의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즉, 유소년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의 증가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부양부담은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2000년 현재 유소년부양부담(29.2%)이 노년부양부담(10.2%)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1〉 1980년 이후 유소년, 청장년 및 고령인구 현황

(단위 : 천명, %)

	1980년	1990년	2000년
[구성비]	100.0	100.0	100.0
0-14	33.8	25.7	21.0
15-64	62.3	69.3	71.7
65+	3.9	5.0	7.3
유소년부양비1)	54.3	37.0	29.2
노년부양비2)	6.2	7.2	10.2
노령화지수	11.4	19.4	35.0

주 : 1) 유소년부양비=유소년인구(0-14)/청장년인구(15-64)×100
2) 노년부양비=노년인구(65세이상)/청장년인구(15-64)×100
자료 : 통계청 DB

따라서 고령인구의 증가가 곧바로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노년인구의 증가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유소년 인구의 감소로 현재까지 생산연령인구의 총부양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라 부양비를 산정해보면, 노년부양비가 유소년부양비보다 높아지는 때는 2020년 즈음이다. 즉, 출산율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유소년 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시점인 2020년 즈음이다.

5) 노년학자 Cowgill(Cowgill, 1986)은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4% 미만인 경우 유년인구국(young populations), 4-6%인 경우 청년국(youthful populations), 7-9인 경우 성년국(mature aging populations), 10%이상을 노년국(aged populations)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림 1 > 총부양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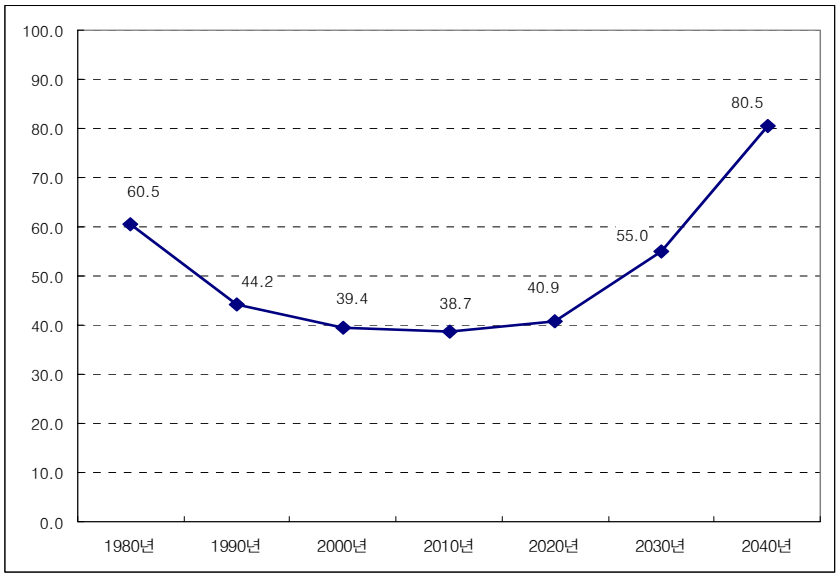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DB에서 재구성

<그림 1>에 나타나듯이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던 총 부양부담이 - 현재의 인구변화 추세로 간다면 - 2020년을 시점으로 다시 증가하다 2040년에는 80.5%로 피크를 이룰 전망이다. 즉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의 부양부담의 문제는 2020년에 이르러 진정한 사회문제로 우리의 피부에 와 닿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하는 고용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2〉 부양비

(단위 : %)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유소년부양비	23.9	19.6	19.2	22.8
노 년 부 양 비	14.8	21.3	35.8	58.7

자료 : 통계청 DB에서 재구성

현재 우리나라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경제활동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년 사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6] 여성의 경제활동을 비롯한 사회참여에의 요구가 최근 들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실태는 질적인 증가보다 양적증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는 IMF외환 위기 등을 계기로 급격히 진행되는 구조조정 및 노동시장 유연화[7] 과정에서 비정규직이 증가하였으며, 이렇듯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남성보다 유연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노동시장에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1년 현재 비정규직 노동력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52.1%[8]로 비정규직 문제는 여성의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비정규직 문제[9]는 노동시장의 수요차원에서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노동력 공급자인 여성들 역시 전일제 노동보다는 시간제[10] 노동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11] 물론 시간제 노동을 선호하는 이면에는 여성들이 전일제 노동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존재하며, 그 중심에는 여성의

---

6) 1985년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 남성은 76.4%였던데 반해, 2002년 8월 현재 여성은 49.1, 남성은 74.2%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7)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따른 여성노동력의 변동과정에 대해서는 Seifert, H., 1976, Frauenarbeit - Eine disponible Arbeitskraeftereserve?, WSI-Mitteilung 1/1976을 참고할 수 있음.

8)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자료에 따라 분류하면, 전체 근로자 중 여성 비율은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규직 내 여성비율은 26.6%이다. 또한 비정규직과 - 법적으로는 정규직이나 기업 내에서의 신분이나 처우가 정규직과 다른 - 명목비정규직 근로자를 합하면 전체 여성 근로자의 70.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태홍(2002), "기업의 여성 비정규직 관리 현황과 정책과제",『여성비정규직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국여성개발원 제 5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을 참조하기 바람.

9)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는 서류상의 고용계약유무, 노동시간(주당 35시간미만), 근무형태(가내, 파견 등), 고용계약형태(임시, 일용) 등을 중심으로 개념이 규정되고 있다(김태홍・김미경,『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98).

10) 시간제 노동은 흔히 35시간을 기준으로 35시간 미만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시간제 노동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태홍・김미경,『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 91을 참고.

11)『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 실시한 여성들의 35시간 이상 일자리 희망여부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57.6%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다. 김태홍・김미경(2002),『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94.

재생산노동에 대한 책임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 재생산 노동에 대한 책임 중 임신, 출산, 육아 문제가 여성 취업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 되어왔다. 따라서 여성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은 주로 보육문제 및 모성보호와 같은 문제들에 치중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은 여전히 20-24세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30-34세에 가장 낮게 나타나다 이후 서서히 다시 증가[12]하는 전형적인 M자형 구조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보육문제 및 모성보호 정책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향상을 꾀할 경우 목표집단은 결혼, 출산, 육아, 자녀교육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20-34세 사이의 여성이 된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제고에 있어 또한 고려해야 할 집단은 45-64세의 중고령 여성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35세부터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다시 증가하다 45세에 피크를 이루고 그 이후 다시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참조).

실제로 우리나라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남성과 비교해보면 여성인력활용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즉, 남녀차이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대가 30-40대로, 이시기는 출산 및 자녀교육이라는 변수가 취업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 40대 중반이후부터서는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을 떠맡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하다.[13] 40-49세의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93.5%인데 반해, 여성은 63.7.%에 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고령층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50-59세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남성은 83.6%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성은 53.5%로 떨어지고 있다 (<그림 2>참조).

12) 35세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성의 재취업이 전문직을 비롯한 상용직에서 보다 단순서비스업을 비롯한 임시직 등에서 이루어지는데서 기인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13) 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조사한 장기요양보호대상 노인 수발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74.3%가 여성이며, 40대 이상이 82.4%인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01).

<그림 2> 연령 및 성별 경제활동참가율(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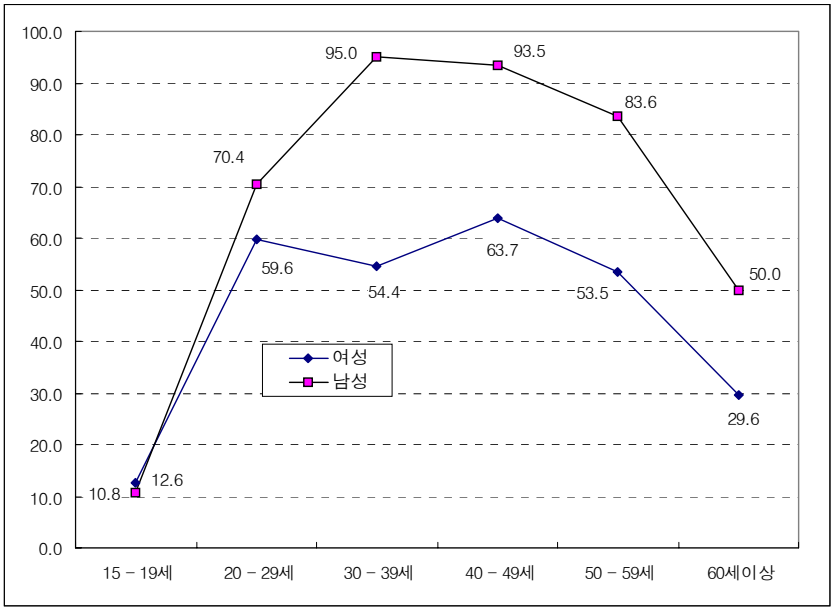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02), 『경제활동인구연보』.

45세 이상 여성노동력에 대해 노동시장 내 수요가 낮은 이유를 노동수요 측면에서 설명하면, 여성들이 20대부터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해 직업경력을 충분히 쌓지 못하기 때문에 45세 이상의 중년층 여성들에 대한 수요 – 특히 전문직에서 – 역시 낮다고 할 수 있다.[14] 따라서 이 연령층 여성들에 대한 수요는 저임금, 단순직에 대부분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동공급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출산과 육아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다시 직업경력을 쌓아갈 즈음에 노인부양이라는 또 다른 부양책임이 떠맡겨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노인부양 책임을 지는 여성이 주로 중고령자에 몰려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45세 이상부터 다시 하락하는 현상은 어느 정도 설명되어진다. 따라

14) 2000년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전문직 종사자는 387천명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5세 미만이 334천명으로 전체 전문직 여성의 86.3%를 차지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1 : 191).

서 고령화 사회 시대를 맞아 중고령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 가고 있는 현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쟁점은 바로 여성의 노인부양 부담에 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 노인부양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한 기존연구 검토

현재 한국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회참여에의 욕구가 높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성의 고학력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은 결혼과 함께 출산, 양육, 자녀교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노인부양 등 재생산 노동에의 이중, 삼중 부담(Mehrfach Belastung)을 안고 있으며(Becker-Schmidt, 1983; Kim, 2000), 이러한 부담은 여성의 직업경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여성노동력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 및 만성질환 노인 인구층의 증가가 여성의 부양부담을 더욱 더 증가시키고 있으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이 문제는 나날이 더 심각해져 갈 전망이다. 평균수명의 연장과 함께 장수의 길은 열렸지만 중요한 관건은 노인들의 건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이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01년 전국 22,000가구 5,058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 노인의 45.6%가 장기요양보호대상자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또한 이들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의 50.9%가 가족부양을 받고 있었다(정경희, 2001 : 67). 이는 결국 우리나라 노인들의 평균수명은 늘었지만 상당히 많은 노인들이 건강하지 못한 와병상태에서 노후를 보내고 있으며 이들을 돌봐야 하는 노인부양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장기보호대상자의 연령별 분포

(단위 : %)

	전체	남자	여자
65-69세	26.0	28.6	25.3
70-74세	26.0	24.8	26.4
75-79세	23.4	23.4	23.4
80세 이상	24.5	23.2	24.9

자료 : 보건사회연구원(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p. 455에서 인용

2001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22,000가구 5,058 노인 대상 조사결과를 기초로 노인수발자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수발자 1,011명 중 여성의 비율은 74.3%이며, 취업자 비율은 51.7%(522명)이다. 그리고 취업자 중 여성은 361명으로 69.2%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수발자 중 수발을 위해 취업을 중단한 경우가 9.5%로 남성의 4.6%보다 4.9% 포인트가 높았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여성이 3.6%, 남성은 5.0%로 남성이 약간 높았다(정경희, 2001 : 186). 이 결과는 노인부양이 여성취업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한 편, 성지미・차은경(2001)은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부모와의 동거가 여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노인의 경우 가사를 지원하기 때문에 여성노인과의 동거가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정(+)의 효과를 주지만, 남성노인과의 동거는 기혼여성의 근로시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취업 기혼여성의 연령별 차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또한 외국의 경우 딸의 11.6%가 자신의 어머니 부양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취업자의 35%가 부모부양책임 때문에 작업일정을 수정하였고, 23%가 노동시간을 줄였다는 연구결과(Stone et al., 1987; 207)가 있다. Brody(1987)와 Horwitz(1985)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부양책임 때문에 퇴직한 비율이 30%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다. 이 밖에 취업이 노인부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상옥, 1999; 권중돈, 1997)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취

업유무가 노인부양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반면, 취업이 노인부양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Steuve & O'Donnel)도 있으며, 이와는 달리 취업상태에 있는 부양자들, 특히 여성들은 비취업상태의 부양자들만큼 많은 부양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Cantor, 1983). 이렇듯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의 취업의 방해요인으로서 노인부양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Ⅲ. 여성의 노인부양과 경제활동

1. 연구방법 및 한계

본 고는 한국여성개발원의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 원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가구 내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및 취업실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에서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을 대상으로 2001년 11월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5개 지역 4,646가구, 4,758명의 여성에 대한 취업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의 조사결과를 65세 이상 노인과의 동거유무로 재구성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본 고의 주목적은 전체 4,646가구 중 65세 이상 노인을 모시고 사는 618가구(전체 조사가구의 13.3%)의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634명)의 노인부양 및 취업실태를 분석하는데 있다.

고령사회 대비 여성고용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첫째, 65세 이상 노인과의 동거유무[15]에 따른 여성취업에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여성연령계층을 45세 미만층과 45세 이상층으로 나누어 비교해보았다.

---

15) 본 고에서는 노인부양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돌봄을 필요로 하는 건강하지 못한 노인과의 동거뿐만 아니라, 노인의 건강상태와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할 경우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동거노인에 대한 돌봄이 필요할 경우와 필요하지 않을 경우로 다시 나누어 여성의 부양부담과 취업실태를 분석해보았다.

우리나라는 아직 노년국(aged populations)이 아닌 이제 막 노령화 사회에 진입한 성년국(mature aging populations)으로, 핵가족이 가장 지배적인 가족형태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노인과 동거하는 세대는 12-13%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여성의 노인부양이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 아직까지 여성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육아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 서 서두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에 최근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노인부양 및 여성고용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노년국으로 진입하게 될 경우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의 취업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여성고용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점들이 무엇인지 시사점들을 밝히는 것으로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이 되고, 연소인구 비율보다 많아지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부양과 여성의 취업과의 상관관계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밝혀질 것으로 전망한다.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관계

조사대상자는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618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63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가족관계는 가구 내 동거하는 같은 연령대 남성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를 먼저 살펴보면, 15-19세가 7.9%, 20대는 15.0%, 30대 16.1%, 40대 18.9%, 50대는 20.6%, 60-64세는 24.6%를 나타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하고 있는 여성의 연령층이 60-64세 이상에 주로 몰려 있는 이유는 이 연령층의 여성들이 동거노인의 배우자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이 연령층 동거인구 중 남성비율이 5.4%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동거노인의 남편보다 부인의 부양부담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0대에서 50대사이의 동거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 연령층

이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가진 주부양층으로 보이며, 이 연령층의 여성들이 부양하는 노인인구는 남편보다는 시부모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노인인구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봤을 때 역시 6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의 배우자 부모일 경우가 1.8%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분포단위

(단위 : %(명))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64세
남 성	10.8(66)	7.8(48)	11.8(72)	11.8(72)	10.9(67)	15.0(92)	10.8(66)	9.0(55)	6.7(41)	5.4(33)
여 성	7.9(50)	6.8(43)	5.2(33)	7.3(46)	8.8(56)	10.9(69)	8.0(51)	10.3(65)	10.3(65)	24.6(156)
계	9.3(116)	7.3(91)	8.4(105)	9.5(118)	9.9(123)	12.9(161)	9.4(117)	9.6(120)	8.5(106)	15.2(189)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동거가족의 특성을 혼인상태별로 살펴보면 성별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미혼의 경우가 남성은 45.4%인데 반해, 여성은 21.1%에 지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배우율에 있어 남성은 48.0%인데 반해, 여성은 75.2%로, 65세 노인과 동거하면서 이들을 부양해야 하는 여성들의 노인과의 관계는 주로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의 며느리임을 알 수 있다.

<표 5> 조사대상자의 혼인상태별 분포

(단위 : %(명))

	유배우	이 혼	사 별	별 거	미 혼
계	61.9(771)	2.6(33)	1.9(24)	0.5(6)	33.1(412)
여 성	75.2(477)	1.3(8)	2.1(13)	0.3(2)	21.1(134)
남 성	48.0(294)	4.1(25)	1.8(11)	0.7(4)	45.4(278)

65세 이상 노인과 함께 사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교육정도를 살펴보면, 고졸이 33.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초졸(22.6%), 중졸(18.5%), 대졸이상(11.4%), 무학(9.6%), 전문대졸(4.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의 학력 순위인 고졸(44.8%), 대졸이상(20.1%), 중졸(18.0%), 초졸(11.3%), 무

학(3.6%), 전문대졸(2.3%)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여성의 경우 고졸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49.5%에 불과한 반면, 남성의 경우 67.2%나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학력이 남성보다 월등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의 전체 대상자 여성의 고졸이상 학력 소유자가 53.2%(김태홍 · 김미경, 2002 : 30)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학력이 약간 떨어지고 있다.

조사대상 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본인 스스로 가구주인 경우는 4.4.%에 지나지 않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가구주는 노인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아[16] 조사대상자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이 주로 시부모임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표 6> 조사대상자의 가구주관계별 분포

(단위 : 명(%))

	가구주	가구주의 배우자	가구주의 미혼자녀	가구주의 미혼형제, 자매	가구주의 기혼자녀	가구주의 며느리	기타
남성	49.8(305)	0.5(3)	35.5(217)	2.0(12)	9.0(55)	0.0(0)	3.3(20)
여성	4.4(28)	65.9(418)	18.6(118)	0.8(5)	1.1(7)	6.6(42)	2.5(16)
계	26.7(333)	33.8(421)	26.9(335)	1.4(17)	5.0(62)	3.4(42)	2.9(36)

2.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부담

조사대상자의 노인부양부담을 살펴보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유무[17]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조사대상 가구의 부양내용은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없는 경우 특별히 돌보고 있

16) 가구주가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가정한다면 - 본 자료가 노인과 거주하는 가구를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 가구주의 기혼자녀가 9.0%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는 사실이 설명되지 않음.

17)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65세 이상이면서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에 체크된 노인을 말한다.

는 사람이 없다에 여성의 경우 91.2%, 남성은 97.4%가 응답하고 있는 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경우 여성은 44.7% 남성은 74.9%만이 특별히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즉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여부에 따라 가구의 부양부담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며, 특히 여성의 부양부담이 늘고(46.5%포인트)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양내용에 있어서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없는 경우 부양부담은 취학 전 아동이 가장 높아 여성의 부양부담 중 85.0%, 남성의 72.7%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있는 경우의 부양부담은 신체쇠약자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신체쇠약자이면서 질병중인 환자, 질병중인 가족 등의 순으로 취학 전 아동에 대한 부담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인이 있는 가구 여성의 부양부담의 증가에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7> 조사대상자의 부양내용(1)

(단위 : %(명))

성 별	돌봄이 필요한 노인 유 무	특별히 돌보고 있는 사람이 음	현재 돌보고 있는 가구원							
			소 계	취학전 아 동	신 체 쇠약자	질병중인 가 족	장애가족	신체쇠약자 / 질병중인 가족	신체쇠약자/장애가족	질병중인 가족/장애가 족
여 성	없음	91.2(416)	100(11)	85.0	0.0	0.0	7.5	2.5	2.5	2.5
	있음	**44.4(79)**	**100(47)**	**9.1**	**42.4**	**10.1**	**8.1**	**20.2**	**2.0**	**8.1**
	소계	78.1(495)	100(58)	30.9	30.2	7.2	7.9	15.1	2.2	6.5
남 성	없음	97.4(414)	100(40)	72.7	0.0	9.1	0.0	0.0	9.1	9.1
	있음	**74.9(140)**	**100(99)**	**6.4**	**46.8**	**12.8**	**8.5**	**19.1**	**2.1**	**4.3**
	소계	90.5(554)	100(139)	19.0	37.9	12.1	6.9	15.5	3.4	5.2

〈표 8〉 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조사대상자의 부양내용(2)

(단위 : %(명))

성별	돌봄이 필요한 노인유무	특별히 돌보고 있는 사람이 없음	취학전 아동	신체쇠약자	질병중인 가족	장애가족	신체쇠약자/질병중인 가족	신체쇠약자/장애가족	질병중인 가족/장애 가족
여성	없음	91.2(416)	7.5(34)	0(0.0)	0(0.0)	0.7(3)	0.2(1)	0.2(1)	0.2(1)
	있음	44.4(79)	5.1(9)	23.6(42)	5.6(10)	4.5(8)	11.2(20)	1.1(2)	4.5(8)
	소계	78.1(495)	6.8(43)	6.6(42)	1.6(10)	1.7(11)	3.3(21)	0.5(3)	1.4(9)
남성	없음	97.4(414)	1.9(8)	0(0.0)	0.2(1)	0(0.0)	0(0.0)	0.2(1)	0.2(1)
	있음	74.9(140)	1.6(3)	11.8(22)	3.2(6)	2.1(4)	4.8(9)	0.5(1)	1.1(2)
	소계	90.5(554)	1.8(11)	3.6(22)	1.1(7)	0.7(4)	1.5(9)	0.3(2)	0.5(3)

3. 노인부양과 여성의 경제활동

1) 노인동거 유무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형태가 M자 형태를 갖는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림2> 참고). 하지만 노인부양 여성의 경제활동형태는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림 3>을 보면, 노인비동거 여성은 M자 형태를 보이지만 노인동거 여성은 노인비동거 여성과 비교하여 출산과 육아로 인한 노동시장 퇴장이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40세 후반이후 노인동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반면, 노인비동거 여성은 상대적으로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노인비동거의 경우 30-34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떨어져 다시 꾸준히 증가하다 50-54세 이후 완만히 감소하는 반면, 노인동거의 경우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에서 35세를 기점으로 약간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지만 45세부터 하강세를 보이다 50세 이후로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그림 3> 노인동거유무 및 연령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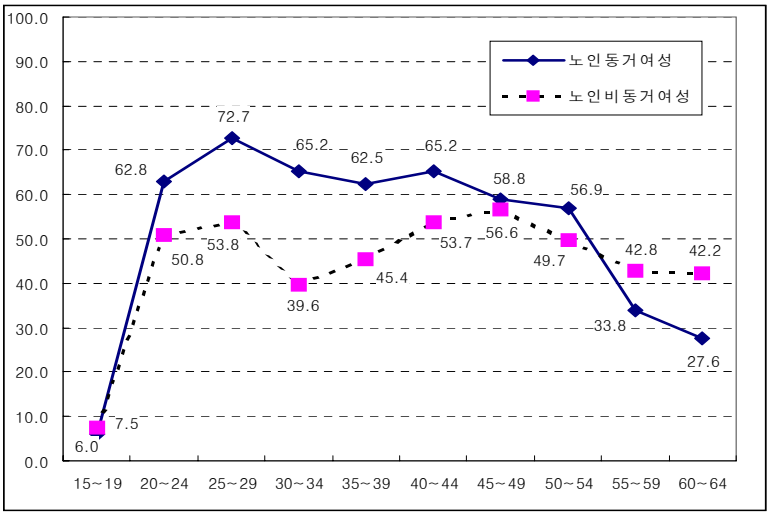

위의 그림을 통해 노인동거와 관련하여 두 가지 특징적인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경우 비 동거 여성에 비해 높은 경제활동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출산과 육아 기간에 있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노인비동거 여성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둘째는 40세 후반이후 노인동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비동거 여성에 비해 급격한 하락을 보인다는 것이다[18].

<표 9>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연령계층을 더욱 세분화하였다. 15-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노인동거 여성이 48.2%(취업자비율 44.0%)로서 노인 비동거 여성의 44.8%(취업자비율 37.4%)에 비해 3.4%포인트 높게 나타난다. 언 듯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45세를 기준으로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출산과 육아기간과 관련된 15-44세 연령층 여성과 육아 및 자녀교육 부담으로부터 벗어난 45-64세 연령층 여성들 사이에는 노인과 동거함으로서 나타나는 경제활동참가율의 양상은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다.

18) 본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노인부양에서 찾고자 한다.

<표 9> 65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15세-64세 여성 부양자의 경제활동분포

(단위 : %(명))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취업자비율	실업자비율	
노인동거	15~64세의 여성	48.2(296)	44.0(279)	2.7(17)	53.3(338)
	15~44세의 여성	55.2(164)	51.5(153)	3.7(11)	'44.8(133)
	45~64세의 여성	39.2(132)	37.4(126)	1.8(6)	60.8(205)
노인비동거	15~64세의 여성	44.8(1,854)	41.5(1,716)	3.3(138)	55.2(2,282)
	15~44세의 여성	42.7(1,211)	39.1(1,107)	3.7(104)	57.3(1,623)
	45~64세의 여성	49.4(643)	46.8(609)	2.6(34)	50.6(659)

15-45세 여성의 연령계층을 5세 간격으로 더욱 세분화해 보면 노인동거가 어떤 측면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더욱 분명해진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노동시장을 퇴장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집단은 30-34세 연령층이다(<그림 3>참고). 그러나 이 연령층에 있는 여성을 노인동거여부에 따라 다시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오히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노인동거 여성과 노인비동거 여성과의 경제활동차이를 보면 25-29세 18.9% 포인트, 30-34세 25.6%포인트, 35-39세 17.1%포인트, 40-44세 11.5%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 연령층의 여성이 대부분 출산, 육아, 보육과 관련된 집단임을 고려하면, 이 연령층에서 노인동거 여성은 비동거 여성에 비해 이들 요인으로 인한 시장퇴출이 적었음을 말해 준다. 특히 30-34세의 경우 노인동거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비동거여성에 비해 25.6%포인트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으로서 여성의 전통적인 M형 경제활동참가율을 벗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표 10> 25-44세 여성부양자의 경제활동 분포

(단위 : %)

노인동거 여부	연령계층	경제활동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취업자비율	실업자비율	
노인동거	25~29세	72.7	66.7	6.1	27.3
	30~34세	65.2	48.3	5.6	46.2
	35~39세	62.5	60.7	1.8	37.5
	40~44세	65.2	65.2	0.0	34.8
	계(15~44세)	55.2	51.5	3.7	44.8
노 인 비 동 거	25~29세	53.8	48.3	5.6	46.2
	30~34세	39.6	36.2	3.5	60.4
	35~39세	45.4	43.0	2.4	54.6
	40~44세	53.7	50.3	3.4	46.3
	계(15~44세)	42.7	39.1	3.7	57.3

출산과 육아는 혼인상태와 관련이 깊다는 점을 고려하여 노인동거여부를 다시 혼인상태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표 11>에서와 같이 미혼의 경우 노인동거여성과 비동거여성과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는 4.1%포인트로서 크지 않은 반면, 기혼여성의 경우는 18.9%포인트라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노인동거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기혼여성으로부터 연유한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1> 혼인상태별 15-44세 여성의 경제활동분포

(단위 : %)

		경 제 활 동 참 가 율			비경제활동 인구비율
			취업자비율	실업자비율	
노 인 동 거	미 혼	47.3	41.9	5.4	52.7
	기 혼	61.3	58.9	2.4	38.7
노인비동거	미 혼	43.2	38.6	4.6	56.8
	기 혼	42.4	39.3	3.1	57.6

노인동거 유무에 따른 여성의 취업유무를 6세 미만 자녀의 보육유형을 고

려하여 다시 살펴보면, <표 12>에서와 같이 노인동거 여성은 보육부담을 동거하는 노인과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들은 6세 미만의 자녀의 보육에서 시부모 및 친정부모에게 맡기는 비율이 24.0%에서 33.4%까지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 스스로 돌보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시부모 및 친정에 맡기는 비율은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다.

<표 12> 노인동거 유무 및 연령계층별 6세 미만 자녀의 보육분포

(단위 : %)

가구구분	연령계층	보육시설	시부모 및 친정부모	본 인	기 타
노인동거	15~44세	36.0	24.0	46.0	6.0
	25~34세	39.4	33.3	45.5	0.0
	30~34세	45.8	33.4	41.7	0.0
노인비동거	15~44세	39.5	6.7	58.1	6.2
	25~34세	24.9	6.9	74.6	3.5
	30~34세	44.9	7.6	53.6	7.0

주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는 복수응답을 함.

이러한 사실은 결국 앞 서 지적하였듯이 15-44세 여성에게 있어서 노인과의 동거는 취업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45-64세 여성의 취업과 노인동거는 15-44세 여성과는 달리 부정적인 작용하고 있었다. 즉 45-64세 연령집단에 있어 노인동거와 비동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는 10.2%포인트로써 비동거 여성의 참가율이 높은 반면, 반대로 15-44세 연령집단 여성들은 비슷한 차이로(12.5% 포인트) 노인동거 여성의 참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9〉 참고).

연령계층을 5세 간격으로 다시 살펴보면, 노인동거여성은 노인 비동거 여성에 비해 45-54세의 연령층에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지만 55-59세 연령층에서 급격히 하락하여 노인비동거 여성에 비해 9%포인트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60-64세의 경우는 더욱 큰 차이를 보여 14.6%포인트 낮은 참가율을 보인다.

<표 13> 45-64세 여성부양자의 경제활동 분포

(단위 : %)

연령계층	노 인 동 거				노 인 비 동 거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취업자	실업자	
45~49세	58.8	52.9	5.9	41.2	56.6	54.0	2.6	43.4
50~54세	56.9	56.9	0.0	43.1	49.7	46.2	3.5	50.3
55~59세	33.8	32.3	1.5	66.2	42.8	39.9	2.8	57.2
60~64세	27.6	26.3	1.3	72.4	42.2	41.3	0.9	57.8
계 (45~64세)	39.2	37.4	1.8	60.8	49.4	46.8	2.6	50.6

45-64세 노인동거 여성의 경제활동이 노인비동거 여성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노인과의 동거가 보육의 도움으로 작용했던 15-44세 여성들과는 달리 이 연령층의 여성에게서는 노인부양의 책임이 남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의 몇 가지 다른 문항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노동시간을 살펴보면, 노인동거 시 15-44세의 경우는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여성 비율이 9.9%로 낮았지만, 45-64세의 경우 20.0%로 크게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5--44세 여성들은 함께 동거하는 노인으로부터 보육 등의 도움을 얻고 있다는데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5-64세 여성의 36시간 미만 취업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이유는 물론 출산과 육아를 마친 후 여성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경력단절 등의 이유로 인해 시간제와 임시직 등의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주요한 이유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노인동거여성의 경우, 15-44세 연령층에서 노인 비동거 여성에 비해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적고, 36시간 미만 일한 여성의 비율 또한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45-64세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가 더 많아 노인부양부담이 취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하겠다[19].

19) 물론 15-44세 노인동거여성이 모두 45-64세 연령층일 때 노인과 동거하지 않을 수 있고

<표 14> 노인동거유무 및 노동시간별 취업여성분포

(단위 : %(명))

	15~44세		45~64세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노인동거	9.9(15)	90.1(136)	20.0(25)	80.0(100)
노인비동거	13.8(152)	86.2(953)	18.9(115)	81.1(494)
계	13.3(167)	86.7(1089)	19.1(140)	80.9(594)

이렇듯 노인부양이 45-64세 연령계층 여성의 취업율 저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표 15>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진다. 45-64세의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취업여성 중 36시간 이상의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노인동거가구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와 연로 및 질병'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노부모 부양과 가족수발' 역시 26.7%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인을 부양하는 여성이 취업해 있을 경우 비부양 여성보다 시간제를 비롯한 비정규직에의 취업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표 15> 36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여성이 36시간 이상의 일을 원하지 않는 이유

(단위 : %)

이 유	노인동거가구		노인비동거가구	
	15~45세	45~64세	15~45세	45~64세
가사 및 육아, 탁아문제	32.0	6.7	36.5	6.8
노부모 부양 및 가족수발	20.0	26.7	0.9	0.0
건강상의 이유, 연로 및 질병	20.0	33.3	22.6	54.5
필요가 없어서	20.0	26.7	15.7	20.5
안정성이 없고 보수가 낮아서	0.0	0.0	2.6	2.3
기타	8.0	6.7	21.7	15.9

주 : 학생응답자는 제외.

15-44세 노인비동거여성이 45-64세에 이르러 노인과 동거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36시간 미만 일한 여성비율이 45-64세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그 비율이 역으로 약간 높게 나타나는 것은 노인부양부담이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물론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취업률 저하를 단순히 노인부양부담에서만 찾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노인부양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특히 45세 이후 노인부양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2)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

동일하게 노인을 부양하더라도 부양하고 있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 논문에 있어 일관성 있게 주장되는 내용으로, 노인의 건강상태가 부양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며(이영자・김태현, 1992 : 1-18), 직업과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Montgomery et., 1987)고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부양 부담정도는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에서는 조사되지 않아서 대안변수로서 노인이외에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이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용하여 노인부양부담 정도를 파악했다. 즉 현재 돌보고 있는 가구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동거한다면 여성의 부양부담은 훨씬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16>를 <표 9>와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부양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보다 노인과의 동거여부[20]에 따른 경제활동참가율이 훨씬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노인을 부양함으로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45-64세 연령층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만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노인과의 동거 시 경제활동참가율은 39.2%, 비동거 시에는 49.4%를 나타내어 10.2%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들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36.3%, 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없을 경우에는 40.2%로 3.9% 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고 있다.

20) 15-44세의 경우 동거여부별 차이는 10.2% 포인트, 건강유무별 차이는 3.3.% 포인트 차이를 나타냈다.

<표 16> 동거노인의 보호필요 유무별 여성부양자의 경제활동참여 분포

(단위 : %)

	보 호 유 무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활동 인구
			취업자비율	실업자비율	
15~44세	보호가 필요한 노인 없음	56.2	53.3	2.9	43.8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있음	52.9	47.1	5.7	47.1
45~64세	보호가 필요한 노인 없음	40.2	38.2	2.0	59.8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있음	36.3	35.2	1.1	63.7

동거하는 노인이외에 보호하는 가구원이 있는가 여부로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을 경우, 노인과 동거하는 15-44세 연령층의 여성의 경우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45-64세 여성의 경우는 보호노인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15-44세 연령층만큼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21].

21) 하지만 <표 17>은 노인과 동거하는 45세 이상 64세 미만 여성의 경우 돌보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노인과 동거하는 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여성의 경우 14.5%가 가구주인 반면,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이 없는 여성의 경우는 2.7%로 나타났다. 이는 한 가구의 경제적 책임이 많은 부분 가구주에게 있음을 고려할 때 노인과 동거하면서 돌보아야 하는 또 다른 가구원이 있을 지라도 여성이 가구주일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밖에 없음은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44-64세 노인동거 여성의 가구주와의 관계>

	가 구 주	가구주의 배우자	기 타
보호하고 있는 사람 없음	2.7	93.5	3.8
보호하고 있는 사람 있음	14.5	81.2	4.3

<표 17> 노인동거 및 가구원 보호 여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연령층	노인동거여부	가구원보호 여부			
		돌보는 가구원 없음		돌보는 가구원 있음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있음	보호가 필요한 노인 없음	보호가 필요한 노인 있음	보호가 필요한 노인 없음
15-44	노인동거	73.3	63.2	56.8	55.2
	노인비동거	-	51.0	-	28.8
45-64	노인동거	30.0	39.9	39.0	50.0
	노인비동거	-	49.5	-	46.5

또한 노인비동거 여성은 15-44세의 경우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본인이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이 없는 경우에 비해 22.2%포인트 낮게 나타났지만 45-64세 여성의 경우는 그 차이가 미미했다. 15-44세 연령층 여성의 보호하고 있는 가구원의 내용을 보면, 여성이 보호하는 가구원 중 '취학 전 아동'이라 응답한 여성은 노인동거여성이 52.2%이었고 노인비동거여성이 95.0%로 나타났다. 즉 노인비동거 여성의 경우 보호하고 있는 대상이 대부분 취학전 아동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15-44세 연령층의 여성은 돌보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보육의 부담에서 벗어난 45-64세 연령층 여성의 보호내용을 보면 노인동거 여성은 취학전 아동(취학전 질병과 신경쇠약아동 포함)으로 응답한 10%이고 기타 질병, 신경쇠약자을 돌보는 경우가 90%로 나타났고 노인비동거 여성은 각각 31%과 69%로 나타났다. 45-64세 노인동거 여성의 보호내용 중 90% 범주 안에는 질병과 신경쇠약 노인이 다수 포함될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노인부양부담 가중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표 17>은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돌보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음을 보여줌으로써 아직까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노인부양부담보다는 육아부담이 더 크게 작용하는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노인과 동거하는 집단만을 비교했을 때 14세에서 44세 연령층보다 45세에서 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은 45세에서 6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노인부양이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진다.

Ⅳ. 결론 및 제언

이상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노인동거여부 및 동거노인의 건강상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에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노인동거유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으로, 14-44세 여성의 경우 노인과 동거할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더 높아 여성의 경제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45-64세의 경우 반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져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을 분석한 결과,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결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은 연령집단은 보살핌이 필요한 노인과 동거하는 45세에서 64세 여성으로(36.3%),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보호가 필요없는 노인과 동거하는 14세에서 4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56.2%)보다 19.9% 포인트나 낮았다(〈표16〉 참조).

본 연구는 노인과의 동거유무 및 동거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앞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한 여성고용정책은 45세 이상 중장년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 연령층 여성의 취업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22]이라고 제안한다.

따라서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여성고용정책에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22) 이에 대한 기장 최근의 연구로는 김미경·송다영 (2002),『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이 있다.

첫째, 유년부양비보다 많아지는 노년부양비의 증가로 생산연령인구의 총 부양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취업을 원하는 건강한 중고령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중고령 여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증가와 함께 늘어가는 여성의 노인부양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주 노인부양 책임자인 여성을 부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도입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위해 활용된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의 데이터 사용에 있어서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제 4차 여성의 취업실태」에는 본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였던 내용이 조사항목으로서 직접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다양하게 활용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령사회 도래에 따른 노인부양부담 증가가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관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이 둘의 상관관계가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심층적으로 조사되어야져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선행작업의 수준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령사회에 맞는 여성고용정책이 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문제제기를 바탕으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으로, 이는 본 연구자의 향후 후속작업으로 남는다.

참고문헌

김미경, 2000. “노인복지에 대한 가족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제 34집 봄호, 한국사회학회

김미경・송다영, 2002, 여성의 노인부양부담 완화를 위한 성인지적 정책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태홍・김미경, 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 1999, “노인부양의 현황과 정책과제”, 21세기 노인복지정책,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성지미, 차은경, 2001. “세대간 동거와 기혼여성의 노동공급급”, 노동경제논집, 제 24집 봄호, 한국노동경제학회

성향숙, 2000, 노인부양여성의 부양부담분석에 따른 여성복지대책,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이영자, 김태현, 1992. 노인부양자 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인지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12

정경희 외, 2001, 장기요양보험대상 노인의 수발실태 및 복지욕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혜경, 1999, “정책적 관점에서 본 여성취업과 노인부양”, 노인복지연구, ‘99 겨울호, 한국노인복지학회

한국여성개발원, 2001, 한국여성의 삶과 일에 대한 국민체감 의식조사 연구, 여성부

한국여성개발원, 2001, 여성통계연보 200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2002, 고령화 시대의 사회정책 장기 발전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1, 노인 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Becker-Schmidt, R., (1987), Die doppelte Vergesellschaftung - die doppelte Unterdrueckung : Besonderheiten der Frauenforschung in den Sozialwissenschaften, in : Unterkirchner, L. und Wagner, J. (Hg.), Die andere Haelfte der Gesellschaft, wien. Cowgill, D.U., 1986, aging around the world, Belmont, CA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rody, E. M., Kleban, M. H., Johnsen, P. T., Hoffman, C. and Schoonover, C. B., (1987), Work Status and Parent Care : A Comparison of Four Groups of Women, *The Gerontologist*, Vol. 27, No. 2, pp. 201-208

Cantor, M. H., (1983), Strain among Caregivers : A Study of Experience in the Unites States, The Gerontologist, vol. 23, no. 6

Horwitz, A., (1985), Family Caregiving to the Frail Ederly, in; Mitchell, J. & Oakley, A., (ed.), *What is Feminism? A Re-Examination*, New York : Pantheon

Kim, Mi-Kyong, (2000), Frauenarbeit im Spannungsfeld zwischen Beruf und Familie - Arbeits- und Lebenssituation von Lehrerinnen und Lehrern in Suedkorea, Opladen : Leske+Budrich

Kramer, Betty J. and Kipnis Stuart, (1995), "Eldercare and Work-Role Conflict : Toward an Understanding of Gender Differencies in Caregiver Burden, *The Gerontologist*, Vol. 35, No. 3, pp. 340-348

Lewis Jane (eds), (1993), Women and Social Policies in Europe, London : Edward Elgar

Montgomery Rhonda J. V. & Borgatta, Edgar F., (1987), Value, Costs, and Hath Care Policy, in : Borgatta, Edgar F.(ed.), *Critical Issues in Aging Policy - Linking Research and Values*, California : Sage

Seifert, H., (1976), Frauenarbeit - Eine disponible Arbeitskraeftereserve?, WSI-Mitteilung

Steuve, A. & O'Donnell, L., (1984), The Daughters of Aging Parents, in : Baruch, G. and Brooks-Gunne, J. (eds), *Women in Midlife*, New York : Plenum

Stone, R., Cafferata, G. L. & Sangl, J., (1987), Caregivers of the Frail Elderly : A National Profile, *The Gerontologist*, vol. 27, no. 5

An Analyse of Elderly Women's Care and Employment in an Aging Society

Mikyong Kim* · Jaeseon J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policies for female employment in the aged society. This study analyses women's providing of elderly care and employment using data from '4th survey of female employment in Korea'. This study especially focuses on females of 45 years old and over due to increasing both labor demand and supply of highly educated and motivated women in those age levels for the aged society. Results show that females aged 45-64 years with the elderly who need care have the lowest rate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 Professor of Gwangju-Universtiy, ** Senior Researcher, KWDI